|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35호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 2010년 10월 28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10년 10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보험 관계를 규율하고 공민의 사회보험 가입과 사회보험 대우를 적용하는 합법적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공민이 발전의 성과를 같이 누리게 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를 구축하여 공민이 노령, 질병, 산재, 실업, 출산 등 상황에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는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 사회보험 제도는 범위를 넓히고 기본을 보장하고 다차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의 발전수준에 어울려야 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사용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용 납부기록, 개인의 권익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사회보험 자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대우를 적용하며, 본 단위의 비용 납부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편입시켜야 한다.  국가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사회보험자금을 적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조세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한다.  **제6조**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보장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사회 각계가 사회보험기금의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7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전국의 사회보험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국무원 기타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안에서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사회보험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기타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8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험 등기, 개인의 권익기록, 사회보험 대우지급 등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9조** 공회는 법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보험 중대사항에 대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감독위원회에 참가하여 종업원의 사회보험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2장 기본양로보험**  **제10조** 종업원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단위와 종업원은 공동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 사용단위에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전일제 종업인원 및 기타 탄력적 취업인원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적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업무직원의 양로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1조** 기본양로보험은 사회 통합과 개인계좌를 결부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사용단위와 개인의 납부부분,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사용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종업원의 임금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여 기본양로보험 통합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종업원은 국가가 규정한 본인의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 사용단위에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전일제 종업인원, 그리고 기타 탄력적 취업인원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여 각각 기본양로보험 통합기금과 개인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제13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종업원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간주 납부연한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기본양로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기본양로보험기금으로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를 한다.  **제14조** 개인계좌는 앞당겨 지출할 수 없으며, 기장이율은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며, 이자는 세금을 면제한다.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계좌 잔액은 승계할 수 있다.  **제15조** 기본양로금은 통합 양로금과 개인계좌 양로금으로 구성한다.  기본양로금은 개인비용의 누계 납부연한, 납부임금, 현지 종업원의 평균임금, 개인계좌잔액, 도시인구의 평균 예상수명 등 요소에 따라 확정한다.  **제16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정년 퇴직연령 도달시의 누계 비용납부 연한이 만 15년인 경우에는 월별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한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정년 퇴직연령 도달시의 누계 비용납부 연한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만 15년까지 납부한 후 월별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거주민 사회보험양로보험으로 전환하여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양로보험 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년 퇴직연령에 미달 시에 질병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신체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질병 또는 신체장애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본양로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18조** 국가는 기본양로금의 정상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종업원의 평균임금 증장, 물가인상 상황에 따라 기본양로보험 대우기준을 시의 적절하게 상향 조정한다.  **제19조** 개인이 통합지역을 벗어나서 취업을 하는 경우 그 기본양로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전이하며, 비용 납부연한은 누계로 계산한다. 개인이 정년 퇴직연령 도달 시에 수령하는 기본양로금은 분할 계산하여 일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0조** 국가는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은 개인의 비용납부, 집단 보조 및 정부의 보조를 결부시키는 방법을 실시한다.  **제21조**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대우는 기초 양로금과 개인계좌 양로금으로 구성한다.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한 농촌 거주민은 국가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월별로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대우를 적용한다.  **제22조** 국가는 도시 거주민의 사회양로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도시 거주민의 사회양로보험과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을 병합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기본의료보험**  **제23조** 종업원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단위와 종업원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 사용단위에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전일제 종업인원과 기타 탄력적 취업인원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적으로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는 신형 농촌합작의료 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신형 농촌합작의료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5조** 국가는 도시 거주민의 기본의료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도시 거주민의 기본의료보험은 개인의 비용납부와 정부의 보조를 결부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적용하는 자, 노동능력을 상실한 신체장애자, 저소득 가정의 만 60세 이상 노인과 미성년자 등 개인의 비용납부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한다.  **제26조**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합작의료 및 도시 거주민의 기본의료보험 대우기준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정년 퇴직연령 도달시의 비용 납부연한이 국가의 규정연한에 도달한 경우에는 퇴직 후 기본의료보험료를 더는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대우를 적용한다. 국가의 규정 연한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연한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28조** 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 진료항목, 의료서비스시설 표준 및 급진, 구급치료에 부합되는 의료비용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29조** 보험가입인원의 의료비용 중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의료기구, 약품경영단위와 직접 결산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와 위생보건행정부서는 격지 진료 의료비용 결산 제도를 수립하여 보험가입인원이 기본의료보험 대우를 적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0조** 아래의 의료비용은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  (2) 제3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3) 공공위생보건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4) 경외에서의 치료비용.  의료비용을 마땅히 제3자가 부담해야 하나 제3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제3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선행 지급한다.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선행 지급한 후에는 제3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관리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구, 약품경영단위와 서비스계약서를 체결하여 의료서비스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  의료기구는 보험가입인원에게 합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개인이 통합지역을 벗어나서 취업하는 경우 그 기본의료보험 관계는 당사자와 함께 전이하며, 비용납부 연한은 누적하여 계산한다.  **제4장 산재보험**  **제33조** 종업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단위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종업원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국가는 부동한 업계의 산재리스크 정도에 따라 업계의 차별화 비율을 확정하여 산재보험기금 사용, 산재발생률 등 상황에 비추어 업계별로 비율 등급을 확정한다. 업계 차별화 비율과 업계내의 비율등급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공표, 시행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용단위의 산재보험기금 사용, 산재발생률 및 소속 업계의 비율등급 등 상황에 비추어 사용단위의 비용 납부비율을 확정한다.  **제35조** 사용단위는 본 단위 종업원의 임금총액에 따라 사회보험처리기구가 확정한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한다.  **제36조** 종업원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해 사고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대우를 적용한다. 그중, 노동능력 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체장애 대우를 적용한다.  산재인정과 노동능력 감정 절차는 간편하고 편의해야 한다.  **제37조** 종업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어 업무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범죄  (2) 주취 또는 마약 흡입  (3) 자해 또는 자살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의 상황.  **제38조** 산재로 인해 발생한 아래의 비용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재 치료 의료비용과 건강회복 비용  (2) 입원 화식 보조금  (3) 통합지역 밖에서 치료한 교통비용과 식사 숙박비  (4) 신체장애 보조기구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5)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생활 무능력자의 간호비  (6) 1회에 지급하는 신체장애 보조금과 1～4급 신체장애 종업원이 월별로 수령하는 신체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 시에 수령하는 1회적 의료보조금  (8) 산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수령한 장례보조금, 친족 위로금 및 산재 보조금  (9) 노동능력 감정비.  **제39조** 산재로 인해 발생한 아래의 비용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사용단위가 지급한다.  (1) 산재 치료기간의 임금과 복리비용  (2) 5급, 6급 신체장애 종업원이 월별로 수령하는 신체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 시에 수령하는 1회적 신체장애 취업보조금.  **제40조** 산재종업원이 기본양로금 수령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체장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적용한다. 기본양로보험 대우가 신체장애 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산재보험기금에서 그 차액을 보완 지급한다.  **제41조** 종업원 소재 사용단위가 법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단위가 산재보험대우와 관련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단위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재보험기금에서 선행 지급한다.  사용단위는 산재보험기금에서 선행 지급한 산새보험대우 관련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사용단위가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제3자의 원인으로 인해 산재를 입었으나, 제3자가 산재의료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제3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재보험기금에서 선행 지급한다. 산재보험기금에서 선행지급한 후에는 제3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산재 종업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대우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1) 대우 적용조건을 상실한 경우  (2) 노동능력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3)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  **제5장 실업보험**  **제44조** 종업원은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단위와 종업원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5조** 실업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실업보험기금으로부터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1) 실업 전에 사용단위와 본인이 실업보험료를 납부한지 만 1년이 되는 경우  (2) 본인의 의사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취업이 중단된 경우  (3) 이미 실업등기를 했으며, 구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46조** 실업인원이 실업하기 전에 사용단위와 본인의 누적 비용납부 연한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그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은 최장 12개월이며, 누적 비용납부 연한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은 최장 18개월이며, 누적 비용납부 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은 최장 24개월이다. 다시 취업한 후 재 실업한 경우 비용납부 시간은 다시 계산하며, 실업보험금의 수령기간과 그 전 실업 시에 수령해야 하나 수령하지 아니한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은 합병 계산하되 최장 2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실업보험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다만 도시 거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48조** 실업인원은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에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기본의료보험 대우를 적용한다.  실업인원이 납부해야 하는 기본의료보험료는 실업보험기금 중에서 지급하며, 개인은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실업인원이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 재직 종업원의 사망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그 유가족에게 1회적 장례보조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인이 사망 후 기본양로보험 장례보조금, 산재보험 장례보조금 및 실업보험 장례보조금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 그 유가족은 그 중의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제50조** 사용단위는 지체 없이 실업인원에게 노동관계 종료 또는 해지 증명서를 제시하고 실업인원의 명단을 노동관계를 종료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험처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실업인원은 본 단위가 제시한 노동관계 종료 또는 해지 증명을 지참하고 지체 없이 지정된 공공취업 서비스기구에 가서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  실업인원은 실업등록 증명과 개인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사회보험처리기구에 가서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해야 한다.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은 실업등록을 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51조** 실업인원이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보험금 수령과 기타 실업보험대우를 적용하던 것을 정지해야 한다.  (1) 다시 취업한 경우  (2) 병역에 복무하는 경우  (3)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4)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적용하는 경우  (5) 정당한 이유가 없이 현지 인민정부의 지정부문 또는 기구가 소개한 적절한 일자리나 훈련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52조** 종업원이 통합지역을 벗어나서 취업하는 경우 그 실업보험관계는 본인과 함께 전이하며, 비용납부 연한은 누계로 계산한다.  **제6장 출산보험**  **제53조** 종업원은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단위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며, 종업원은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사용단위가 이미 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종업원은 출산보험 대우를 적용하며, 종업원의 미취업 배우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출산의료비용 대우를 적용한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대우에는 출산의료비용과 출산수당이 포함된다.  **제55조** 출산의료비용에는 아래의 항목이 포함된다.  (1) 출산 의료비용  (2) 가족계획의 의료비용  (3)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항목의 비용.  **제56조** 종업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출산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1) 여성 종업원이 출산휴가를 하는 경우  (2) 가족계획 수술 휴가를 하는 경우  (3)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출산수당은 종업원 소재 사용단위의 직전 연도 종업원의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한다.  **제7장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  **제57조** 사용단위는 설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집조, 등기증서 또는 단위 직인을 지참하고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신청하여 사회보험등기를 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사회보험등기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용단위의 사회보험등기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용단위가 법에 의해 종료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처리기구에 가서 사회보험 등기 변경 또는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 민정부서 및 기구편성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사용단위의 설립, 종료 상황을 통보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사회보험처리기구에 개인의 출생, 사망 및 호적등기, 이전, 말소 등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58조** 사용단위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종업원의 사회보험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그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책정한다.  스스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 사용단위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전일제 취업인원 및 기타 탄력적 취업인원은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사회보험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에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 제도를 구축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공민의 신분증번호로 한다.  **제5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통일적으로 징수하며, 실시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60조** 사용단위는 사회보험료를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적 등 법정사유가 없는 한 납부를 지체하거나 감면하지 못한다. 종업원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사용단위에서 원천징수하며, 사용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료 납부명세 상황을 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 사용단위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전일제 취업인원 및 기타 탄력적 취업인원은 직접 사회보험료 징수기구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61조**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는 법에 따라 제때에 전액으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비용 납부상황을 정기적으로 고용단위와 개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62조** 사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단위가 납부한 전달 금액의 110%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며, 납부단위가 신고수속을 보완한 후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는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  **제63조**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는 기한부 납부하거나 보완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사용단위가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개설한 사용단위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현급 이상 유관 행정부서에 사회보험료 이체결정을 신청하여 그 계좌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이체할 수 있다. 사용단위의 계좌 잔액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는 당해 사용단위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유예 납부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에 상당한 재산을 압류, 차압, 경매하여 그 경매소득으로 사회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장 사회보험기금**  **제64조**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양로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및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된다. 모든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장부를 설정하여 채산하고 국가의 통일적 회계제도를 집행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전문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하지 못한다.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점진적으로 전국 통합을 실시하며,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성급 통합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 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65조** 사회보험기금은 예산을 통하여 수지의 균형을 잡는다.  사회보험기금으로 지급하기에 부족할 시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보조를 한다.  **제66조** 사회보험기금은 통합적립 차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사회보험기금 예산은 사회보험 항목에 따라 각각 편성한다.  **제67조** 사회보험기금 예산, 결산 초안의 편성, 심사 및 승인은 법률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8조** 사회보험기금은 재정 전문계좌에 예치하며, 구체적인 관리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69조** 사회보험기금은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투자 운영을 통해 가치 보전과 증식을 실현한다.  사회보험기금은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 운영하지 못하며, 기타 정부의 예산균형에 사용하지 못하며, 사무실의 건설, 개축에 사용하거나 인원 경비, 운영비용, 관리비용 지급에 사용하지 못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0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정기적으로 사회에 사회보험 가입상황과 사회보험기금의 수입, 지출, 잔액 및 수익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71조** 국가는 전국 사회보장기금을 설립하며, 중앙 재정예산의 조달과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방식의 적립자금으로 구성하여 사회보장 지출의 보충, 조절에 사용한다. 전국 사회보장기금은 전국 사회보장기금 관리운영기구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며,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가치 보전과 증식을 실현한다.  전국 사회보장기금은 정기적으로 사회에 수지, 관리 및 투자운영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서, 사회보험행정부서, 회계감사기관은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운영 상황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제9장 사회보험 처리**  **제72조** 통합지역은 사회보험처리기구를 설립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소재지 사회보험행정부서와 기구편성 관리기관의 비준을 받고 본 통합지역에 분지기구를 설립하거나 서비스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사회보험처리기구 인원의 경비와 사회보험 처리로 발생하는 기본 운영비용, 관리비용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에서 보장한다.  **제73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업무, 재무, 안전 및 리스크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제때에 사회보험대우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  **제74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업무처리, 통계, 조사를 통하여 사회보험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며, 유관단위와 개인은 지체 없이 여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지체 없이 사용단위의 서류철을 작성하여 사회보험 가입인원, 비용납부 등 사회보험 데이터를 완정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등록, 신고한 원시증빙과 지급 결산 회계증빙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 가입인원의 납부비용과 사용단위 납부비용, 그리고 사회보험대우 적용 등 개인의 권익기록을 적시에 완정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의 권익기록명세서를 본인에게 무료로 우송해야 한다.  사용단위와 개인은 무료로 사회보험처리기구로부터 그 비용납부와 사회보험대우 적용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사회보험자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 전국 사회보험정보시스템은 국가의 통일적 규획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급별 관리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한다.  **제10장 사회보험 감독**  **제76조**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투자운영 및 감독 검사상황에 대한 본급 인민정부의 전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 법 실시상황에 대한 법 집행검사 등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감독직권을 행사한다.  **제7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용단위와 개인의 사회보험 법률, 법규 준수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대상 사용단위와 개인은 사회보험과 관련한 자료를 여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보고를 하거나 숨겨서는 아니된다.  **제78조** 재정부서, 회계감사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운영 상황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제79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운영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돈 개선 건의를 제기하고 법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리거나 유관 행정부서에 처리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금 검사결과는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운영과 관련되는 자료를 열람, 기록, 복제하고 전이, 은닉 또는 소멸될 수 있는 자료를 봉인 보관한다.  (2) 조사사항과 관계되는 단위와 개인에게 질문하며, 조사사항과 관계되는 문제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사회보험기금 은닉, 전이, 점유, 유용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80조** 통합지역 인민정부는 사용단위 대표, 사회보험 가입인원 대표, 공회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회보험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사회보험 업무에 대하여 자문의견과 건의를 제기함으로써 사회감독을 실시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정기적으로 사회보험감독위원회에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사회보험감독위원회는 회계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운영 상황에 대한 연차 회계감사와 전문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회계감사결과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사회보험감독위원회가 사회보험기금 수지, 관리 및 투자운영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건의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처리기구 및 그 업무직원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유관부서에 건의할 수 있다.  **제81조** 사회보험행정부서와 기타 유관 행정부서, 사회보험처리기구, 사회보험료 징수기구 및 그 업무직원은 법에 따라 사용단위와 개인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사회보험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사회보험행정부서, 위생보건행정부서, 사회보험처리기구, 사회보험료 징수기구 및 재정부서, 회계감사기관이 본 부서, 본 기구의 직책범위에 속하는 제보나 고발을 접한 후에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본 부서, 본 기구의 직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동시에 처리권한이 있는 부서, 기구에 넘겨 처리하게 해야 한다. 처리권한이 있는 부서, 기구는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며, 구실을 대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제83조** 사용단위 또는 개인이 사회보험료 징수기구의 행위가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단위 또는 개인은 사회보험처리기구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등기, 사회보험료 확정, 사회보험대우 지급, 사회보험 이전 연결수속을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사회보험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이 소재 사용단위와 사회보험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단위가 개인의 사회보험권익을 침해한 경우 개인은 사회보험행정부서 또는 사회보험료 징수기구에 의법 처리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1장 법적 책임**  **제84조**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단위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그에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5조** 사용단위가 노동관계 종료 또는 해지 증명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6조**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구는 기한부 납부 또는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체납한 날로부터 일당 0.5‰의 체납금을 징수하며,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유관 행정부서는 체납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7조** 사회보험처리기구 및 의료기구, 약품경영단위 등 사회보험 서비스기구가 사기, 증명자료 위조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기금의 지급을 편취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편취한 사회보험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편취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회보험 서비스기구가 범한 경우에는 서비스계약을 해지하며,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이 종업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종업자격을 취소한다.  **제88조** 사기, 증명자료 위조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대우를 편취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편취한 사회보험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편취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9조** 사회보험처리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사회보험기금, 사용단위 또는 개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1) 사회보험의 법정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회보험기금을 재정 전문계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회보험금을 가로채거나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비용 납부기록, 사회보험대우 적용기록 등 사회보험 데이터, 개인의 권익기록을 분실하거나 개찬한 경우  (5) 사회보험 법률, 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제90조** 사회보험료 징수기구가 제멋대로 사회보험료 납부기수, 비율을 변경하여 사회보험료를 적게 또는 과다 징수한 경우 유관 행정부서는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추징하거나 납부하지 말아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제9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기금을 은닉, 전이, 점유, 유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 운영한 경우 사회보험행정기구, 재정부서, 회계감사기구는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제92조** 사회보험행정부서와 기타 유관 행정부서, 사회보험처리기구, 사회보험료 징수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사용단위와 개인의 정보를 누설한 경우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주며, 사용단위 또는 개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3조** 국가 업무직원이 사회보험 관리, 감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제9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12장 부 칙**  **제95조** 도시에서 취직하는 농촌거주민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96조** 농촌 집단소유 토지를 징발하는 경우에는 징발대상 토지 농민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배정해야 하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징발대상 토지 농민을 상응하는 사회보험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97조**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이 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98조**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三十五号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七次会议于２０１０年１０月２８日通过，现予公布，自２０１１年７月１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胡锦涛  2010年10月28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社会保险关系，维护公民参加社会保险和享受社会保险待遇的合法权益，使公民共享发展成果，促进社会和谐稳定，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国家建立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生育保险等社会保险制度，保障公民在年老、疾病、工伤、失业、生育等情况下依法从国家和社会获得物质帮助的权利。  **第三条** 社会保险制度坚持广覆盖、保基本、多层次、可持续的方针，社会保险水平应当与经济社会发展水平相适应。  **第四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用人单位和个人依法缴纳社会保险费，有权查询缴费记录、个人权益记录，要求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社会保险咨询等相关服务。  个人依法享受社会保险待遇，有权监督本单位为其缴费情况。  **第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将社会保险事业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国家多渠道筹集社会保险资金。县级以上人民政府对社会保险事业给予必要的经费支持。  国家通过税收优惠政策支持社会保险事业。  **第六条** 国家对社会保险基金实行严格监管。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立健全社会保险基金监督管理制度，保障社会保险基金安全、有效运行。  县级以上人民政府采取措施，鼓励和支持社会各方面参与社会保险基金的监督。  **第七条** 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负责全国的社会保险管理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社会保险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社会保险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社会保险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社会保险工作。  **第八条** 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社会保险服务，负责社会保险登记、个人权益记录、社会保险待遇支付等工作。  **第九条** 工会依法维护职工的合法权益，有权参与社会保险重大事项的研究，参加社会保险监督委员会，对与职工社会保险权益有关的事项进行监督。  **第二章　基本养老保险**  **第十条** 职工应当参加基本养老保险，由用人单位和职工共同缴纳基本养老保险费。  无雇工的个体工商户、未在用人单位参加基本养老保险的非全日制从业人员以及其他灵活就业人员可以参加基本养老保险，由个人缴纳基本养老保险费。  公务员和参照公务员法管理的工作人员养老保险的办法由国务院规定。  **第十一条** 基本养老保险实行社会统筹与个人账户相结合。  基本养老保险基金由用人单位和个人缴费以及政府补贴等组成。  **第十二条** 用人单位应当按照国家规定的本单位职工工资总额的比例缴纳基本养老保险费，记入基本养老保险统筹基金。  职工应当按照国家规定的本人工资的比例缴纳基本养老保险费，记入个人账户。  无雇工的个体工商户、未在用人单位参加基本养老保险的非全日制从业人员以及其他灵活就业人员参加基本养老保险的，应当按照国家规定缴纳基本养老保险费，分别记入基本养老保险统筹基金和个人账户。  **第十三条** 国有企业、事业单位职工参加基本养老保险前，视同缴费年限期间应当缴纳的基本养老保险费由政府承担。  基本养老保险基金出现支付不足时，政府给予补贴。  **第十四条** 个人账户不得提前支取，记账利率不得低于银行定期存款利率，免征利息税。个人死亡的，个人账户余额可以继承。  **第十五条** 基本养老金由统筹养老金和个人账户养老金组成。  基本养老金根据个人累计缴费年限、缴费工资、当地职工平均工资、个人账户金额、城镇人口平均预期寿命等因素确定。  **第十六条** 参加基本养老保险的个人，达到法定退休年龄时累计缴费满十五年的，按月领取基本养老金。  参加基本养老保险的个人，达到法定退休年龄时累计缴费不足十五年的，可以缴费至满十五年，按月领取基本养老金；也可以转入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或者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按照国务院规定享受相应的养老保险待遇。  **第十七条** 参加基本养老保险的个人，因病或者非因工死亡的，其遗属可以领取丧葬补助金和抚恤金；在未达到法定退休年龄时因病或者非因工致残完全丧失劳动能力的，可以领取病残津贴。所需资金从基本养老保险基金中支付。  **第十八条** 国家建立基本养老金正常调整机制。根据职工平均工资增长、物价上涨情况，适时提高基本养老保险待遇水平。  **第十九条** 个人跨统筹地区就业的，其基本养老保险关系随本人转移，缴费年限累计计算。个人达到法定退休年龄时，基本养老金分段计算、统一支付。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第二十条** 国家建立和完善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制度。  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实行个人缴费、集体补助和政府补贴相结合。  **第二十一条** 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待遇由基础养老金和个人账户养老金组成。  参加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的农村居民，符合国家规定条件的，按月领取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待遇。  **第二十二条** 国家建立和完善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制度。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实际情况，可以将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和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合并实施。  **第三章　基本医疗保险**  **第二十三条** 职工应当参加职工基本医疗保险，由用人单位和职工按照国家规定共同缴纳基本医疗保险费。  无雇工的个体工商户、未在用人单位参加职工基本医疗保险的非全日制从业人员以及其他灵活就业人员可以参加职工基本医疗保险，由个人按照国家规定缴纳基本医疗保险费。  **第二十四条** 国家建立和完善新型农村合作医疗制度。  新型农村合作医疗的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二十五条** 国家建立和完善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制度。  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实行个人缴费和政府补贴相结合。  享受最低生活保障的人、丧失劳动能力的残疾人、低收入家庭六十周岁以上的老年人和未成年人等所需个人缴费部分，由政府给予补贴。  **第二十六条** 职工基本医疗保险、新型农村合作医疗和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的待遇标准按照国家规定执行。  **第二十七条** 参加职工基本医疗保险的个人，达到法定退休年龄时累计缴费达到国家规定年限的，退休后不再缴纳基本医疗保险费，按照国家规定享受基本医疗保险待遇；未达到国家规定年限的，可以缴费至国家规定年限。  **第二十八条** 符合基本医疗保险药品目录、诊疗项目、医疗服务设施标准以及急诊、抢救的医疗费用，按照国家规定从基本医疗保险基金中支付。  **第二十九条** 参保人员医疗费用中应当由基本医疗保险基金支付的部分，由社会保险经办机构与医疗机构、药品经营单位直接结算。  社会保险行政部门和卫生行政部门应当建立异地就医医疗费用结算制度，方便参保人员享受基本医疗保险待遇。  **第三十条** 下列医疗费用不纳入基本医疗保险基金支付范围：  （一）应当从工伤保险基金中支付的；  （二）应当由第三人负担的；  （三）应当由公共卫生负担的；  （四）在境外就医的。  医疗费用依法应当由第三人负担，第三人不支付或者无法确定第三人的，由基本医疗保险基金先行支付。基本医疗保险基金先行支付后，有权向第三人追偿。  **第三十一条** 社会保险经办机构根据管理服务的需要，可以与医疗机构、药品经营单位签订服务协议，规范医疗服务行为。  医疗机构应当为参保人员提供合理、必要的医疗服务。  **第三十二条** 个人跨统筹地区就业的，其基本医疗保险关系随本人转移，缴费年限累计计算。  **第四章　工伤保险**  **第三十三条** 职工应当参加工伤保险，由用人单位缴纳工伤保险费，职工不缴纳工伤保险费。  **第三十四条** 国家根据不同行业的工伤风险程度确定行业的差别费率，并根据使用工伤保险基金、工伤发生率等情况在每个行业内确定费率档次。行业差别费率和行业内费率档次由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社会保险经办机构根据用人单位使用工伤保险基金、工伤发生率和所属行业费率档次等情况，确定用人单位缴费费率。  **第三十五条** 用人单位应当按照本单位职工工资总额，根据社会保险经办机构确定的费率缴纳工伤保险费。  **第三十六条** 职工因工作原因受到事故伤害或者患职业病，且经工伤认定的，享受工伤保险待遇；其中，经劳动能力鉴定丧失劳动能力的，享受伤残待遇。  工伤认定和劳动能力鉴定应当简捷、方便。  **第三十七条** 职工因下列情形之一导致本人在工作中伤亡的，不认定为工伤：  （一）故意犯罪；  （二）醉酒或者吸毒；  （三）自残或者自杀；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三十八条** 因工伤发生的下列费用，按照国家规定从工伤保险基金中支付：  （一）治疗工伤的医疗费用和康复费用；  （二）住院伙食补助费；  （三）到统筹地区以外就医的交通食宿费；  （四）安装配置伤残辅助器具所需费用；  （五）生活不能自理的，经劳动能力鉴定委员会确认的生活护理费；  （六）一次性伤残补助金和一至四级伤残职工按月领取的伤残津贴；  （七）终止或者解除劳动合同时，应当享受的一次性医疗补助金；  （八）因工死亡的，其遗属领取的丧葬补助金、供养亲属抚恤金和因工死亡补助金；  （九）劳动能力鉴定费。  **第三十九条** 因工伤发生的下列费用，按照国家规定由用人单位支付：  （一）治疗工伤期间的工资福利；  （二）五级、六级伤残职工按月领取的伤残津贴；  （三）终止或者解除劳动合同时，应当享受的一次性伤残就业补助金。  **第四十条** 工伤职工符合领取基本养老金条件的，停发伤残津贴，享受基本养老保险待遇。基本养老保险待遇低于伤残津贴的，从工伤保险基金中补足差额。  **第四十一条** 职工所在用人单位未依法缴纳工伤保险费，发生工伤事故的，由用人单位支付工伤保险待遇。用人单位不支付的，从工伤保险基金中先行支付。  从工伤保险基金中先行支付的工伤保险待遇应当由用人单位偿还。用人单位不偿还的，社会保险经办机构可以依照本法第六十三条的规定追偿。  **第四十二条** 由于第三人的原因造成工伤，第三人不支付工伤医疗费用或者无法确定第三人的，由工伤保险基金先行支付。工伤保险基金先行支付后，有权向第三人追偿。  **第四十三条** 工伤职工有下列情形之一的，停止享受工伤保险待遇：  （一）丧失享受待遇条件的；  （二）拒不接受劳动能力鉴定的；  （三）拒绝治疗的。  **第五章　失业保险**  **第四十四条** 职工应当参加失业保险，由用人单位和职工按照国家规定共同缴纳失业保险费。  **第四十五条** 失业人员符合下列条件的，从失业保险基金中领取失业保险金：  （一）失业前用人单位和本人已经缴纳失业保险费满一年的；  （二）非因本人意愿中断就业的；  （三）已经进行失业登记，并有求职要求的。  **第四十六条** 失业人员失业前用人单位和本人累计缴费满一年不足五年的，领取失业保险金的期限最长为十二个月；累计缴费满五年不足十年的，领取失业保险金的期限最长为十八个月；累计缴费十年以上的，领取失业保险金的期限最长为二十四个月。重新就业后，再次失业的，缴费时间重新计算，领取失业保险金的期限与前次失业应当领取而尚未领取的失业保险金的期限合并计算，最长不超过二十四个月。  **第四十七条** 失业保险金的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不得低于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标准。  **第四十八条** 失业人员在领取失业保险金期间，参加职工基本医疗保险，享受基本医疗保险待遇。  失业人员应当缴纳的基本医疗保险费从失业保险基金中支付，个人不缴纳基本医疗保险费。  **第四十九条** 失业人员在领取失业保险金期间死亡的，参照当地对在职职工死亡的规定，向其遗属发给一次性丧葬补助金和抚恤金。所需资金从失业保险基金中支付。  个人死亡同时符合领取基本养老保险丧葬补助金、工伤保险丧葬补助金和失业保险丧葬补助金条件的，其遗属只能选择领取其中的一项。  **第五十条** 用人单位应当及时为失业人员出具终止或者解除劳动关系的证明，并将失业人员的名单自终止或者解除劳动关系之日起十五日内告知社会保险经办机构。  失业人员应当持本单位为其出具的终止或者解除劳动关系的证明，及时到指定的公共就业服务机构办理失业登记。  失业人员凭失业登记证明和个人身份证明，到社会保险经办机构办理领取失业保险金的手续。失业保险金领取期限自办理失业登记之日起计算。  **第五十一条** 失业人员在领取失业保险金期间有下列情形之一的，停止领取失业保险金，并同时停止享受其他失业保险待遇：  （一）重新就业的；  （二）应征服兵役的；  （三）移居境外的；  （四）享受基本养老保险待遇的；  （五）无正当理由，拒不接受当地人民政府指定部门或者机构介绍的适当工作或者提供的培训的。  **第五十二条** 职工跨统筹地区就业的，其失业保险关系随本人转移，缴费年限累计计算。  **第六章　生育保险**  **第五十三条** 职工应当参加生育保险，由用人单位按照国家规定缴纳生育保险费，职工不缴纳生育保险费。  **第五十四条** 用人单位已经缴纳生育保险费的，其职工享受生育保险待遇；职工未就业配偶按照国家规定享受生育医疗费用待遇。所需资金从生育保险基金中支付。  生育保险待遇包括生育医疗费用和生育津贴。  **第五十五条** 生育医疗费用包括下列各项：  （一）生育的医疗费用；  （二）计划生育的医疗费用；  （三）法律、法规规定的其他项目费用。  **第五十六条** 职工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按照国家规定享受生育津贴：  （一）女职工生育享受产假；  （二）享受计划生育手术休假；  （三）法律、法规规定的其他情形。  生育津贴按照职工所在用人单位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计发。  **第七章　社会保险费征缴**  **第五十七条** 用人单位应当自成立之日起三十日内凭营业执照、登记证书或者单位印章，向当地社会保险经办机构申请办理社会保险登记。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十五日内予以审核，发给社会保险登记证件。  用人单位的社会保险登记事项发生变更或者用人单位依法终止的，应当自变更或者终止之日起三十日内，到社会保险经办机构办理变更或者注销社会保险登记。  工商行政管理部门、民政部门和机构编制管理机关应当及时向社会保险经办机构通报用人单位的成立、终止情况，公安机关应当及时向社会保险经办机构通报个人的出生、死亡以及户口登记、迁移、注销等情况。  **第五十八条** 用人单位应当自用工之日起三十日内为其职工向社会保险经办机构申请办理社会保险登记。未办理社会保险登记的，由社会保险经办机构核定其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  自愿参加社会保险的无雇工的个体工商户、未在用人单位参加社会保险的非全日制从业人员以及其他灵活就业人员，应当向社会保险经办机构申请办理社会保险登记。  国家建立全国统一的个人社会保障号码。个人社会保障号码为公民身份号码。  **第五十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加强社会保险费的征收工作。  社会保险费实行统一征收，实施步骤和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第六十条** 用人单位应当自行申报、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非因不可抗力等法定事由不得缓缴、减免。职工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由用人单位代扣代缴，用人单位应当按月将缴纳社会保险费的明细情况告知本人。  无雇工的个体工商户、未在用人单位参加社会保险的非全日制从业人员以及其他灵活就业人员，可以直接向社会保险费征收机构缴纳社会保险费。  **第六十一条** 社会保险费征收机构应当依法按时足额征收社会保险费，并将缴费情况定期告知用人单位和个人。  **第六十二条** 用人单位未按规定申报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数额的，按照该单位上月缴费额的百分之一百一十确定应当缴纳数额；缴费单位补办申报手续后，由社会保险费征收机构按照规定结算。  **第六十三条** 用人单位未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由社会保险费征收机构责令其限期缴纳或者补足。  用人单位逾期仍未缴纳或者补足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费征收机构可以向银行和其他金融机构查询其存款账户；并可以申请县级以上有关行政部门作出划拨社会保险费的决定，书面通知其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划拨社会保险费。用人单位账户余额少于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费征收机构可以要求该用人单位提供担保，签订延期缴费协议。  用人单位未足额缴纳社会保险费且未提供担保的，社会保险费征收机构可以申请人民法院扣押、查封、拍卖其价值相当于应当缴纳社会保险费的财产，以拍卖所得抵缴社会保险费。  **第八章　社会保险基金**  **第六十四条** 社会保险基金包括基本养老保险基金、基本医疗保险基金、工伤保险基金、失业保险基金和生育保险基金。各项社会保险基金按照社会保险险种分别建账，分账核算，执行国家统一的会计制度。  社会保险基金专款专用，任何组织和个人不得侵占或者挪用。  基本养老保险基金逐步实行全国统筹,其他社会保险基金逐步实行省级统筹，具体时间、步骤由国务院规定。  **第六十五条** 社会保险基金通过预算实现收支平衡。  县级以上人民政府在社会保险基金出现支付不足时，给予补贴。  **第六十六条** 社会保险基金按照统筹层次设立预算。社会保险基金预算按照社会保险项目分别编制。  **第六十七条** 社会保险基金预算、决算草案的编制、审核和批准，依照法律和国务院规定执行。  **第六十八条** 社会保险基金存入财政专户，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六十九条** 社会保险基金在保证安全的前提下，按照国务院规定投资运营实现保值增值。  社会保险基金不得违规投资运营，不得用于平衡其他政府预算，不得用于兴建、改建办公场所和支付人员经费、运行费用、管理费用，或者违反法律、行政法规规定挪作其他用途。  **第七十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定期向社会公布参加社会保险情况以及社会保险基金的收入、支出、结余和收益情况。  **第七十一条** 国家设立全国社会保障基金，由中央财政预算拨款以及国务院批准的其他方式筹集的资金构成，用于社会保障支出的补充、调剂。全国社会保障基金由全国社会保障基金管理运营机构负责管理运营，在保证安全的前提下实现保值增值。  全国社会保障基金应当定期向社会公布收支、管理和投资运营的情况。国务院财政部门、社会保险行政部门、审计机关对全国社会保障基金的收支、管理和投资运营情况实施监督。  **第九章　社会保险经办**  **第七十二条** 统筹地区设立社会保险经办机构。社会保险经办机构根据工作需要，经所在地的社会保险行政部门和机构编制管理机关批准，可以在本统筹地区设立分支机构和服务网点。  社会保险经办机构的人员经费和经办社会保险发生的基本运行费用、管理费用，由同级财政按照国家规定予以保障。  **第七十三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建立健全业务、财务、安全和风险管理制度。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按时足额支付社会保险待遇。  **第七十四条** 社会保险经办机构通过业务经办、统计、调查获取社会保险工作所需的数据，有关单位和个人应当及时、如实提供。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及时为用人单位建立档案，完整、准确地记录参加社会保险的人员、缴费等社会保险数据，妥善保管登记、申报的原始凭证和支付结算的会计凭证。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及时、完整、准确地记录参加社会保险的个人缴费和用人单位为其缴费，以及享受社会保险待遇等个人权益记录，定期将个人权益记录单免费寄送本人。  用人单位和个人可以免费向社会保险经办机构查询、核对其缴费和享受社会保险待遇记录，要求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社会保险咨询等相关服务。  **第七十五条** 全国社会保险信息系统按照国家统一规划，由县级以上人民政府按照分级负责的原则共同建设。  **第十章　社会保险监督**  **第七十六条** 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听取和审议本级人民政府对社会保险基金的收支、管理、投资运营以及监督检查情况的专项工作报告，组织对本法实施情况的执法检查等，依法行使监督职权。  **第七十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加强对用人单位和个人遵守社会保险法律、法规情况的监督检查。  社会保险行政部门实施监督检查时，被检查的用人单位和个人应当如实提供与社会保险有关的资料，不得拒绝检查或者谎报、瞒报。  **第七十八条** 财政部门、审计机关按照各自职责，对社会保险基金的收支、管理和投资运营情况实施监督。  **第七十九条** 社会保险行政部门对社会保险基金的收支、管理和投资运营情况进行监督检查，发现存在问题的，应当提出整改建议，依法作出处理决定或者向有关行政部门提出处理建议。社会保险基金检查结果应当定期向社会公布。  社会保险行政部门对社会保险基金实施监督检查，有权采取下列措施：  （一）查阅、记录、复制与社会保险基金收支、管理和投资运营相关的资料，对可能被转移、隐匿或者灭失的资料予以封存；  （二）询问与调查事项有关的单位和个人，要求其对与调查事项有关的问题作出说明、提供有关证明材料；  （三）对隐匿、转移、侵占、挪用社会保险基金的行为予以制止并责令改正。  **第八十条** 统筹地区人民政府成立由用人单位代表、参保人员代表，以及工会代表、专家等组成的社会保险监督委员会，掌握、分析社会保险基金的收支、管理和投资运营情况，对社会保险工作提出咨询意见和建议，实施社会监督。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定期向社会保险监督委员会汇报社会保险基金的收支、管理和投资运营情况。社会保险监督委员会可以聘请会计师事务所对社会保险基金的收支、管理和投资运营情况进行年度审计和专项审计。审计结果应当向社会公开。  社会保险监督委员会发现社会保险基金收支、管理和投资运营中存在问题的，有权提出改正建议；对社会保险经办机构及其工作人员的违法行为，有权向有关部门提出依法处理建议。  **第八十一条** 社会保险行政部门和其他有关行政部门、社会保险经办机构、社会保险费征收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依法为用人单位和个人的信息保密，不得以任何形式泄露。  **第八十二条** 任何组织或者个人有权对违反社会保险法律、法规的行为进行举报、投诉。  社会保险行政部门、卫生行政部门、社会保险经办机构、社会保险费征收机构和财政部门、审计机关对属于本部门、本机构职责范围的举报、投诉，应当依法处理；对不属于本部门、本机构职责范围的，应当书面通知并移交有权处理的部门、机构处理。有权处理的部门、机构应当及时处理，不得推诿。  **第八十三条** 用人单位或者个人认为社会保险费征收机构的行为侵害自己合法权益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用人单位或者个人对社会保险经办机构不依法办理社会保险登记、核定社会保险费、支付社会保险待遇、办理社会保险转移接续手续或者侵害其他社会保险权益的行为，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个人与所在用人单位发生社会保险争议的，可以依法申请调解、仲裁，提起诉讼。用人单位侵害个人社会保险权益的，个人也可以要求社会保险行政部门或者社会保险费征收机构依法处理。  **第十一章　法律责任**  **第八十四条** 用人单位不办理社会保险登记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用人单位处应缴社会保险费数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百元以上三千元以下的罚款。  **第八十五条** 用人单位拒不出具终止或者解除劳动关系证明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的规定处理。  **第八十六条** 用人单位未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由社会保险费征收机构责令限期缴纳或者补足，并自欠缴之日起，按日加收万分之五的滞纳金；逾期仍不缴纳的，由有关行政部门处欠缴数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  **第八十七条** 社会保险经办机构以及医疗机构、药品经营单位等社会保险服务机构以欺诈、伪造证明材料或者其他手段骗取社会保险基金支出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退回骗取的社会保险金，处骗取金额二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属于社会保险服务机构的，解除服务协议；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有执业资格的，依法吊销其执业资格。  **第八十八条** 以欺诈、伪造证明材料或者其他手段骗取社会保险待遇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退回骗取的社会保险金，处骗取金额二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  **第八十九条** 社会保险经办机构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改正；给社会保险基金、用人单位或者个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未履行社会保险法定职责的；  （二）未将社会保险基金存入财政专户的；  （三）克扣或者拒不按时支付社会保险待遇的；  （四）丢失或者篡改缴费记录、享受社会保险待遇记录等社会保险数据、个人权益记录的；  （五）有违反社会保险法律、法规的其他行为的。  **第九十条** 社会保险费征收机构擅自更改社会保险费缴费基数、费率，导致少收或者多收社会保险费的，由有关行政部门责令其追缴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或者退还不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九十一条** 违反本法规定，隐匿、转移、侵占、挪用社会保险基金或者违规投资运营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财政部门、审计机关责令追回；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九十二条** 社会保险行政部门和其他有关行政部门、社会保险经办机构、社会保险费征收机构及其工作人员泄露用人单位和个人信息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给用人单位或者个人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九十三条** 国家工作人员在社会保险管理、监督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第九十四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二章　附 则**  **第九十五条** 进城务工的农村居民依照本法规定参加社会保险。  **第九十六条** 征收农村集体所有的土地，应当足额安排被征地农民的社会保险费，按照国务院规定将被征地农民纳入相应的社会保险制度。  **第九十七条** 外国人在中国境内就业的，参照本法规定参加社会保险。  **第九十八条** 本法自2011年7月1日起施行。 |